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증·고손자녀 및 동반가족에 대한
국내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48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여부	2
2. 제정안의 구성체계	7
3. 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10
4. 정부의견 등	11
5. 주요 조문별 검토	12
가. 지원대상의 범위(안 제2조·제3조, 제6조)	12
나. 지원 기간: 신상변동의 신고 등(안 제7조)	17
다. 영주귀국지원 재단 설립(안 제29조)	19
※ 참고자료	25

I. 제안경위

1. 발의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발의일 : 2024. 8. 27.
3. 회부일 : 2024.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8월, 마지막 재일 독립유공자인 오성규 애국지사의 영주 귀국이 결정되며 생존 애국지사 총 9명 중 8명이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음.

「국적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은 특별귀화의 대상이 되는 반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지원 대상은 손자녀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증·고손자녀 및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장려·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의 및 그 동반 가족의 국내 귀국 및 정착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가족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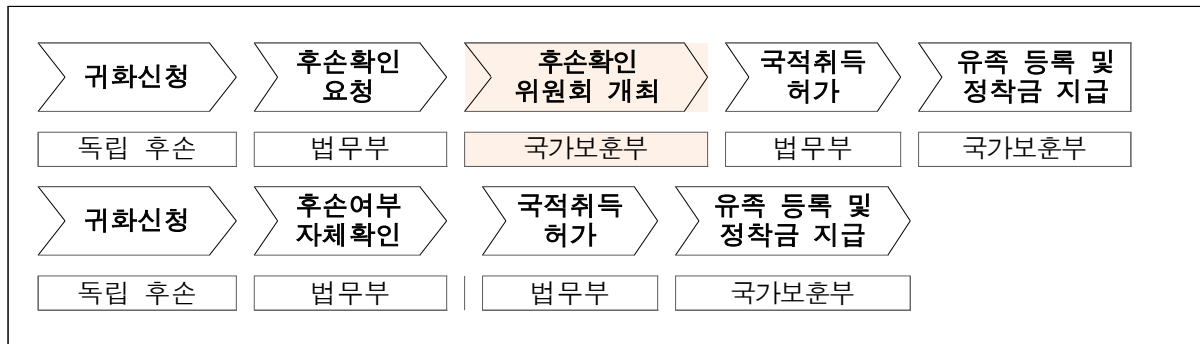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여부

- 제정안은 「국적법」 제7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¹⁾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은 특별귀화의 대상이 됨에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 지원대상은 손자녀까지로 규정하고 있어²⁾ 증·고손자녀 및 그 동반 가족은 현행법상 보호를 받

- 1)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④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 1]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취득 절차



자료: 국가보훈부

- 현재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³⁾)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교육·취업·의료·양로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있음.

[표 2] 독립유공자법상 유족(수권자) 현황('24.9월 기준)

(단위 : 명, %)

구 분	본 인	배우자	자녀·자부	손자녀	중손자녀	고손자녀	합 계
인원수	5	181	3,685	4,950	108	12	8,941
비 율	0.1	2	41.2	55.4	1.2	0.1	100

자료: 국가보훈부

3)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봄(법 제5조제1항제3호).

[표 3] 독립유공자법상 유·가족 지원 현황('19~'24)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사 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대상자수	지원액	대상자수	지원액	대상자수	지원액	대상자수	지원액	대상자수	지원액	대상자수	지원액
영주귀국정착금(가구)		10	560	8	465	9	535	8	485	10	1,213	5	562
생활조정수당		198	608	223	680	259	809	278	875	289	917	393	1,344
교육지원		701	1,445	741	1,468	749	1,309	700	1,317	601	1,223	597	1,230
취업지원		137	28	149	27	90	17	86	16	68	17	107	28
대부지원		8,036	511	8,351	574	8,558	730	8,761	700	8,859	752	8,933	520
의료 지원	보훈병원	32,839	790	30,020	918	32,926	960	30,410	864	35,856	1,098	20,680	575
	위탁병원	29,748	465	27,015	475	19,233	342	20,478	399	22,404	432	13,460	317
양로지원		5	83	6	100	5	83	3	50	5	83	7	119
재가복지서비스		319	850	319	873	320	874	261	845	236	802	203	690
합 계		-	5,340	-	5,580	-	5,659	-	5,551	-	6,537	-	5,385

자료: 국가보훈부

□ 제정안은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 및 동반 가족(이하 “증·고손자녀등”이라 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들에게도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첫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 보상을 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고령화됨에 따라, 현재 특별귀화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대부분

분이 증·고손자녀라는 점에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후손 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표 4]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인정 후손 현황 (최근 10개년)

(단위: 명, %)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6월)	계	비율
자	0	2	0	1	0	0	0	1	0	0	4	1
손	4	22	6	11	8	10	9	8	1	4	83	27
증손	5	27	4	17	12	17	12	24	2	6	126	41
고손	6	20	2	11	4	8	6	16	0	10	83	27
내손 이하	0	1	0	7	1	0	0	2	0	1	12	4
계	15	72	12	47	25	35	27	51	3	21	308	100

자료: 국가보훈부

□ 다만, 지원 대상자 범위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 및 동반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훈 관계법률에 따라 보상이 되는 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범위⁴⁾와 비교할 때 그 대상 범위가 넓은 측면이 있으므로, 보훈보상의 취지,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손의 몇 대까지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독립유공자법은 보상을 받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 없는 미성년 제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후손 등에 대한 지원 기간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증·고손자녀등이 사망할 때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제정안의 입법취지가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귀국 초기에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하도록 지원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도 법안 심사 시에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총칙(목적, 적용 대상자, 정의 및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실체 규정에서는 예우(영주귀국정착금,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보칙(영주귀국지원 재단 등), 벌칙을 규정하여, 제4장 3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5] 제정안 구성 체계

장	조	조 제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대상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지원의 원칙
	제6조	등록 및 결정
	제7조	신상변동의 신고 등
	제8조	지원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제9조	품위 유지 의무
제2장 예우	제10조	영주귀국정착금
	제11조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
	제12조	생활조정수당
	제13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	조사·질문 등

	제1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6조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및 지급 계좌 등
	제17조	권리의 보호
	제18조	교육지원
	제19조	취업지원
	제20조	생업지원
	제21조	의료지원
	제22조	대부
	제23조	양로지원
	제24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25조	양육지원
	제26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27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28조	주택의 우선공급
제3장 보칙	제29조	영주귀국지원 재단
	제30조	영주귀국정착금 등의 환수
	제31조	반환의무의 면제
	제32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4장 벌칙	제34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제35조	벌칙
	제36조	과태료
	제3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부칙		

- 참고로, 제정안의 구성체계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적용대상자의 차이 외에 구성체계 및 지원범위는 비슷함. 다만, 영주 귀국지원 재단(안 제29조)에 관한 사항은 새로이 추가되었음.

[표 6] 독립유공자법과 제정안의 지원범위 등 비교

독립유공자법	영주귀국특별법
○ 정착금 지급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세대주)	○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 보상금·사망일시금·생활조정수당 지급 ○ 생활안정지원금(보상금 미수급자)	○ 생활조정수당 지급
○ 교육·취업·생업·대부지원	○ 교육·취업·생업·대부지원
○ 보훈병원·위탁병원 의료지원	○ 보훈병원·위탁병원 의료지원
○ 양로·요양·양육지원, 재가복지서비스	○ 양로·양육지원, 재가복지서비스
○ 수송시설 및 고궁 등 이용지원	○ 고궁 등 이용지원
○ 주택 우선 공급	○ 주택 우선 공급
	○ 영주귀국지원재단 설립 등

3. 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른 독립유공자 후손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5년간(2025년~2029년) 영주귀국정착금 756억 4,800만원, 생활조정수당 94억 6,000만원, 영주귀국지원재단 설립 539억 3,300만원 등 총 1,407억 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표 7] 향후 5년간 독립유공자후손지원 추가재정 소요액

(단위 : 백만원)

사업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영주귀국정착금	65,920	2,432	2,432	2,432	2,432	75,648
생활조정수당	1,762	1,827	1,892	1,957	2,022	9,460
교육지원	75	78	81	84	86	404
취업지원	3	4	4	4	4	19
대부지원	36	37	38	40	41	192
의료지원	147	158	171	183	197	856
재가복지서비스	34	35	38	42	45	194
영주귀국지원 재단	10,321	10,374	10,722	11,077	11,439	53,933
합 계	78,298	14,945	15,378	15,819	16,266	140,706

자료: 국가보훈부

4. 정부의견 등

-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까지 자녀 및 손자녀와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과도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는 부양·양육 관련성이 낮은 증·고손자녀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보훈보상의 취지와 상충되고, 타 보훈대상자와 현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재단 신설은 기존 기관과의 중복 및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임.
- 행정안전부는 영주귀국지원 재단에 대하여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국가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광복회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내 귀국 및 정착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5.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지원대상의 범위(안 제2조, 제3조, 제6조)

- 제정안 제2조는 이 법의 예우를 받는 적용 대상자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증손·고손자녀”, “동반가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며, 제6조에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손·고손자녀”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후손으로서 공부(公簿) 자료 또는 유전자 검사에서 그 관계가 확인되는 자를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제1호에 따른 증손·고손자녀의 가족으로서 공부 자료 또는 유전자 검사에서 그 관계가 확인되는 자를 말한다.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의 후손 및 동반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등록신청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후손 및 동반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의 후손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존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정안은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 및 동반 가족으로 하고 있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범위(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보다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지원대상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공헌 및 독립유공자 후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보존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⁵⁾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권의 회복’이라는 공헌 및 그 희생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신분적 의무 없이 국권수호를 위해 공헌한 자발적 희생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음.⁶⁾
- 또한, 독립유공자의 희생이 이루어질 시기는 일제의 국권침탈시기 전·후로서 국가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시기였다는 점과 영

5)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6)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바111 결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참조.

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고령화로 인하여 다른 보훈체계와는 차별되는 보훈체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음.⁷⁾

□ 다만, 국가가 독립유공자로서 예우할 보훈의 대상, 범위 및 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체적인 보훈보상의 수준, 국가의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일반적으로 보훈 관계법률은 보훈대상자인 유·가족의 범위를 부양, 양육의 대상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가족에 대한 보훈보상의 취지가 원칙적으로 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 등으로 인하여 유·가족을 제대로 부양·양육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국가가 이를 지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임.
-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도,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은과 예우로서 그와 한가족을 이루고 가족공동체로서 함께 살아온 그 유족에 대하여서도 그에 상응한 예우를 하기 위한 취지일 것임.⁸⁾
-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부양·양육의 관련성

7)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2, p.46.

8)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마319 결정(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사건) 참조.

- 이 미약한 증·고손자녀까지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동등한 보상을 하는 것은 보훈보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 유공자의 손자녀의 경우, 유공자의 사망 등에 따른 영향이 자녀와 비교하여 덜 직접적이며 물질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동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호와 예우 필요성이 유공자의 자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다는 견해⁹⁾가 있음.
 - 즉,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보훈보상의 특수성¹⁰⁾을 고려하더라도, 지원대상의 범위를 증손자녀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증·고손자녀의 독립유공자 본인과 부양·양육 관련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표 8]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유가족 범위 비교

구분	제정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근거 조항	특별법 제3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유가족 범위	증손·고손 자녀, 동반가족	배우자, 자녀, 손 자녀, 며느리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 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 존속과 성년인 형 제자매가 없는 미 성년 제대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 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 존속과 성년인 형 제자매가 없는 미 성년 제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유족의 범위를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로 두고 있음(다만, 법률에 금전적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자료: 국가보훈부

9) 헌법재판소 2020. 3. 26. 2018헌마331 결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참조.

10) 독립유공자의 희생이 이루어질 시기는 국가에 의하여 보호를 기대할 수 없던 시기였던 점 및 대부분의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해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망하였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손자녀까지 유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바189 결정 참조).

○ 둘째, 제정안에 따를 경우 향후 5년간 1,407억 6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녀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다른 보훈대상자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로 인한 국가재정의 부담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을 종합하면, 독립유공자의 후손 등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의 희생 및 공헌, 독립유공자 유족지원의 특수성과 함께 보훈보상의 취지에 따른 전체적인 보상체계, 다른 유공자 후손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재정 추가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지원 기간: 신상변동의 신고 등(안 제7조)

- 제정안 제7조는, 등록신청대상자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사망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등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신고를 받으면 후손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며, 신고인에게 내용과 사유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등록신청대상자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3조에 따른 동반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조에 따른 동반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6.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후손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 및 동반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그런데 등록신청대상자의 신상변동 신고 사유를 보면 사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후손 등에 대한 정착지원은 이들이 생존 시에는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의 입법취지가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귀국 초기에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하도록 지원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지원 기간에 대하여는 후손 등의 초기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방안도 법률안 심사 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들의 정착지원을 위해서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¹¹⁾¹²⁾

□ 그 밖에, 안 제7조제2항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치내용 중 “등록결정의 취소”는 자구 수정 측면에서 “등록결정의 취소”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보호기준 등)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 성별,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2) 그 밖에 영주귀국 및 정착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다. 영주귀국지원 재단 설립(안 제29조)

- 제정안 제29조는, 정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정착지원을 위하여 영주귀국지원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을 설립하고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9조(영주귀국지원 재단) ① 정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정착지원을 위하여 영주귀국지원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사업 2. 독립유공자 후손의 취업지원사업 3.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4.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사업
 5. 독립유공자 후손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6.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7. 독립유공자 후손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8.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 ⑤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독립유공자 후손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명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⑥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⑦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 ⑧ 재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항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⑨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⑩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8항에 따른 차입금
 3. 제9항에 따른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익금
- ⑪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 ⑫ 국가보훈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 ⑬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⑭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영주귀국지원 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⑮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⑯ 그 밖에 재단의 설립·구성·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국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게 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내 정착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이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장학사업, 민간단체 협력,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기관 신규 설립은 그 설립 취지뿐만 아니라 기관 신설의 필요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된 증·고손자녀는 763명이고, 이 후에는 매년 약 19명의 증·고손자녀가 영주귀국 할 것으로 예상되나,¹³⁾ 이들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재단 설립 시 연

13) 최근 10년간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후손의 평균인원(47명) 중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로 인정된 자에 해당하는 비율(41%)을 곱하여 산출하였음(국가보훈부).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9]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인정 증·고손자녀 현황

(단위: 명)

구분	‘07~‘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6월)	계
증손	389	5	27	4	17	12	17	12	24	2	6	515
고손	165	6	20	2	11	4	8	6	16	0	10	248
계	554	11	47	6	28	16	25	18	40	2	16	763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가 최초 개최된 2007년 이후의 수치임.

** 법무부 자체 심사를 통해 인정된 후손은 제외된 수치임.

자료: 국가보훈부

[표 10] 영주귀국지원 재단 설립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인원수	42	42	42	42	42
인건비	3,543	3,664	3,787	3,912	4,040
기본경비	591	611	632	653	674
사업비	5,542	5,731	5,923	6,119	6,319
기타비	645	368	380	393	406
소요비용	10,321	10,374	10,722	11,077	11,439

* 유사 사무(대한민국 정착지원)를 수행하는 남북하나재단 참고

자료: 국가보훈부

- 반면, 국가보훈부는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사업,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학술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증·고손자녀 등의 규모를 고려할 때, 위 사업들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증·고손자녀등에 대한 지원 사업 등도 포함하여 수행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 제29조제9항은,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1항¹⁴⁾은 국가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기관 및 국가에서 출자·출연한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암묵적인 기부 강요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임.

○ 동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도 국가에서 출자·출연한 법인이 될 것이고, 재단 이사장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 조항의 삭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재단이 사업수행을 위해 기부금품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¹⁵⁾에 따라 자발적 기탁금품에 한해

14) 기부금품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5) 기부금품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12

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참고 1

법안 관련 소요 예산 추계¹⁶⁾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사업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대상자	지원액	대상자	지원액	대상자	지원액	대상자	지원액	대상자	지원액	지원액
영주귀국 정착금		515	65,920	19	2,432	19	2,432	19	2,432	19	2,432	75,648
생활조정 수당		515	1,762	534	1,827	553	1,892	572	1,957	591	2,022	9,460
교육지원		39	75	40	78	41	81	42	84	43	86	404
취업지원		16	3	17	4	18	4	19	4	20	4	19
대부지원		515	36	534	37	553	38	572	40	591	41	192
의료 지원	보훈 병원	305	11	318	12	331	14	344	15	356	17	69
	위탁 병원	6,638	136	6,917	146	7,195	157	7,473	168	7,752	180	787
재가복지 서비스		10	34	11	35	12	38	13	42	14	45	194
영주귀국 지원 재단설립		-	10,321	-	10,374	-	10,722	-	11,077	-	11,439	53,933
합 계		-	78,298	-	14,945	-	15,378	-	15,819	-	16,266	140,706

※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영주귀국정착금 및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증손자녀 없이 고손자녀 단독으로 영주귀국한 사례가 없어, 증손자녀만을 기준으로 추계

※ 제정안 시행 첫해의 경우, 증손자녀(515명) 모두 세대분리를 신청하여 영주귀국정착금 및 생활조정수당을 지원받는 것으로 가정(제정안에는 세대분리 제한 규정 없음)

16) 자료: 국가보훈부

참고 2

영주귀국정착금 소요 예산 추계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증·고손자녀 관련 현황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통해 후손으로 인정받은 인원('07~'24)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증손	31	98	61	67	46	38	29	19	5	27	4	17	12	17	12	24	2	6	515
고손	14	17	29	25	34	8	23	15	6	20	2	11	4	8	6	16	0	10	248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인정 후손 중 증·고손 비율('15~'24)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6.	계	비율 (%)
자	0	2	0	1	0	0	0	1	0	0	4	1
손	4	22	6	11	8	10	9	8	1	4	83	27
증손	5	27	4	17	12	17	12	24	2	6	126	41
고손	6	20	2	11	4	8	6	16	0	10	83	27
내손 이하	0	1	0	7	1	0	0	2	0	1	12	4
계	15	72	12	47	25	35	27	51	3	21	308	100

○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영주귀국정착금을 지급하는 경우, 시행연도('25)에 증손 515명 전체가 지급 신청 한 후, 매년 19명씩 추가로 신청하는 것으로 가정

※ 증손 없이 고손만 존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증손만 계산(안 제10조 제1항 제2호)

※ 특별귀화 평균 47명에 후손인정 증손 비율 41% 적용하여 19명 산출

□ 독립유공자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현황

○ 연도별 정착금 지급 단가(가족 수별 차등 지급) : 1회만 지급

(단위 : 만원)

연 도	1인	2~3인	4인 이상
2005.6.1.~2019.12.31.	4,500	5,500	7,000
2020.1.1.~2022.12.31.	5,000	6,000	7,500
2023.1.1.~	8,900	12,800	15,300

○ 최근 5년간('19~'24) 연도별 정착금 지급 가구 수

구분	'19	'20	'21	'22	'23	'24.6	합계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경우	-	-	-	-	2	-	2
세대주인 유족 2명 이상 중 가구원 1명만 있는 경우	2	4	2	1	3	1	13
세대주인 유족 2명 이상 중 가구원이 세대주 포함 2~3명의 경우	6	2	6	6	5	3	28
세대주인 유족 2명 이상 중 가구원이 세대주 포함 4명 이상의 경우	2	2	1	1	-	-	6
계	10	8	9	8	10	4	49

※ 영주귀국정착금 지급세대 중 비율이 가장 높은 2~3인 가구 지급액인 128백만원을 증고손 정착 시 1가구당 지급액 기준으로 산정

□ 독립유공자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소요 예산(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대상가구	(1)(2) 515	(2) 19	19	19	19	591
지원단가	89~153					
결정액	(3) 65,920	(4) 2,432	(4) 2,432	(4) 2,432	(4) 2,432	75,648

※ 산출식

(1) ① 증손인원(515명) : 고손자녀 지원대상은 미미하여 인원에서 제외, 현행 증손자녀가 전부 세대분리하여 영주귀국정착금·생활조정수당 신청한다고 가정

(2) ② 특별귀화 독립유공자 후손 인원 평균(47명) x ③ 후손확인위원회 인정 후손 중 증손 비율 (41%)=19명

(3) ① 증손인원(515명) x 2~3인가구 지급금액 128백만원

(4) (2) x 2~3인가구 지급금액 128백만원

참고 3

생활조정수당 및 생활안정 관련 소요 예산 추계

□ 생활조정수당 지급 단가 : 월 1회 지급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중위소득	2020	2021	2022	2023	2024
가구원 3인 이하	40%초과~50%이하	214		220		242
	40%이하~32%초과	245		252		277
	32%이하*	275		283		311
가구원 4인 이상	40%초과~50%이하	265		273		300
	40%이하~32%초과	296		305		336
	32%이하*	326		336		370

※ '24년부터 30%이하에서 32%이하로 변경

□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요 예산(추계)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대상자 ⁽¹⁾	515	534	553	572	591	2,765
지원단가	242천원~370천원					
소요비용 ⁽²⁾	1,762	1,827	1,892	1,957	2,022	9,460

※ 산출식

(1) ① 증손 가구수 누적

(2) ① 증손 가구수(515명)x② 현재 가구원 수별 지급 평균 단가(285.1천원) x 12개월

□ 교육 지원

○ 최근 5년간('20~'24) 독립유공자 교육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추정치)
대 상 자	741	749	700	601	597
지원단가	1.98	1.75	1.88	2.04	2.06
소요비용	1,468	1,309	1,317	1,223	1,230

※ 지원단가 = 소요비용 ÷ 대상자

○ 독립유공자 교육 지원 관련 소요 예산(추정)

(단위: 명, 백만원)

연 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대 상 자 ⁽¹⁾	39	40	41	42	43	205
지원단가 ⁽²⁾	1.93	1.95	1.97	1.99	2.01	9.85
소요비용 ⁽³⁾	75	78	81	84	86	404

※ 산출식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증손자녀 = 515명
- 독립유공자 유족 현황(2024.8월 기준) = 8,928명
- 독립유공자 유족 연도별 교육지원 비율
= ('20~'24년 평균 대상자수) ÷ (독립유공자 유족) = 678명 ÷ 8,928명 = 7.6%
- '20~'24년 지원단가 증감율 = 1.0%
- (1) '25~'29년 대상자 = '25년 대상자 39명, 연도별 누계 각 1명
'25년 대상자 = 증손자녀 × 독립유공자 유족 연도별 교육지원 비율 = 515명 × 7.6% = 39명
'연도별 누계('26~'29) = 증손자녀 연 19명 × 독립유공자 유족 연도별 교육지원 비율 = 1명
- (2) '25~'29년 지원단가 = 1.93백만원 × '20년~'24년 지원단가 증감 비율
'25년 지원단가 = ('20~'24년 평균 소요비용) ÷ ('20~'24년 평균 대상자수)
= 1,309백만원 ÷ 678명 = 1.93백만원
- (3) 소요비용 = 대상자 × 지원단가

□ 취업 지원

○ 최근 5년간('20~'24) 독립유공자 취업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추정치)
대 상 자	149	90	86	68	107
지원단가	0.18	0.19	0.19	0.25	0.26
소요비용	27	17	16	17	28

○ 독립유공자 취업 지원 관련 소요 예산(추정)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대상자 ⁽¹⁾	16	17	18	19	20	90
지원단가 ⁽²⁾	0.21	0.21	0.21	0.21	0.21	-
소요비용	3	4	4	4	4	19

※ 산출식

(1) 최근 5년간('20~'24) 독립유공자 취업 지원 현황: 영주귀국정착금 추가재정소요의 연도별 대상가구 × 3.1%(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2,432명) 중 최근 5년간 취업지원 받은 대상자 평균 비율)

- '25~'29년 대상자 = '25년 대상자 16명, 연도별 누계 각 1명

'25년 대상자 = 증손자녀 × 독립유공자 유족 연도별 취업지원 비율= 515명 × 3.1% = 16명

'연도별 누계('26~'29) = 증손자녀 연 19명 × 독립유공자 유족 연도별 취업지원 비율= 1명

(2) 취업지원 추가재정소요: 최근 5년간 취업지원 현황의 5년간 평균 지원단가

□ 생업 지원

○ '22년도 기준 국가유공자 등 우선 지원을 7.7%(2년마다 실태조사)

합 계			우선지원대상								그 외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체육유공자		노조·상조화·일 반인	
계	매점	자판기	매점	자판기	매점	자판기	매점	자판기	매점	자판기	매점	자판기
9,861	2,374	7,487	114	642	141	1,263	257	1,104	8	62	1,854	4,416
지원율			7.7%		14.2%		13.8%		0.7%		63.6%	

※ 최근 3년간 추세 : '19년(7.0%) → '20년(7.0%) → '22년(7.7%)

□ 대부 지원

○ 최근 5년간('20~'24) 독립유공자 대부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8월
대상자(독립유공자 수권자)		8,351	8,558	8,761	8,859	8,933
용자금	직접대부인원	149	85	104	101	74
	직접대부지원단가	3.6	8.2	5.5	4.5	4.4
	소계	536	697	572	455	326
이차 보전금	위탁대부인원	523	359	378	434	307
	위탁은행평균잔액	7,787	8,060	8,641	9,086	9,408
	이차보전율	0.49%	0.41%	1.48%	3.27%	3.09%
	소계	38	33	128	297	194
합계		574	730	700	752	520

※ 이차보전금 : 위탁은행평균잔액 × 이차보전율

○ 독립유공자 대부 지원 관련 소요 예산(추정)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대상자		515	534	553	572	591
용자금	직접대부지원 율	1.10%	1.10%	1.10%	1.10%	1.10%
	직접대부지원단 가	5.6	5.6	5.6	5.6	5.6
	소계	32	33	34	35	36
이차 보전금	위탁대부지원 율	5.71%	5.71%	5.71%	5.71%	5.71%
	위탁대부지원단 가	7.7	7.7	7.7	7.7	7.7
	이차보전율	1.80%	1.80%	1.80%	1.80%	1.80%
	소계	4	4	4	5	5
합계		36	37	38	40	41

※ 적용 비율 및 단가 산출 근거

- 직접대부지원율 : 대부대상자 되는 국가유공자 중 직접대부를 받은 건수 비율(5년 평균)
- 직접대부지원단가 : 직접대부금 ÷ 직접대부건수(5년 평균)
- 위탁대부지원율 : 대부대상자 되는 국가유공자 중 위탁대부를 받은 건수 비율(5년 평균)
- 위탁대부지원단가 : 위탁대부금 ÷ 위탁대부건수(5년 평균)
- 이차보전율 : '24년 국가유공자 예산 이차보전율

참고 4

의료지원 소요 예산(추계)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관련 유가족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7.
보훈 병원	대상자	30,990	33,851	31,540	35,856	20,680
	지원단가(원)	29,244	26,997	26,513	30,633	27,797
	소요비용	906	914	836	1,098	575
위탁 병원	대상자	27,015	15,330	15,287	22,404	13,460
	지원단가(원)	17,583	17,950	19,061	19,290	23,551
	소요비용	475	275	291	432	317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추가재정소요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내용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보훈 병원	㉠대상자	763	795	827	859	891	4,135
	㉡수진횟수	0.4	0.4	0.4	0.4	0.4	
	①지원연인원 (㉠×㉡)	305	318	331	344	356	1,654
	②지원단가(원)	35,420	38,087	40,955	44,039	47,355	
	소요비용	11	12	14	15	17	69
위탁 병원	㉠대상자	763	795	827	859	891	16,540
	㉡수진횟수	8.7	8.7	8.7	8.7	8.7	
	①지원연인원 (㉠×㉡)	6,638	6,917	7,195	7,473	7,752	143,898
	②지원단가(원)	20,505	21,140	21,796	22,471	23,168	
	소요비용	136	146	157	168	180	787

※ 보훈병원 산출 근거

- ㉠ 대상자 : (2025년) 763명 = 증손 515명+고손 248명
(2026년~) 전년 인원(증손 515명)에 매년 32명 추가(32명=특별귀화 후손 47명×증·고손 비율 67.9%)
- ㉡ 수진횟수 : 2023년 독립유공자 유가족 보훈병원 수진횟수 사용
(0.4=진료연인원 35,856명÷독립유공자 유가족 의료대상자 86,861명)
- ② 지원단가 : 2023년 독립유공자 유가족 진료단가(30,633원)에 5년 평균증감율(7.53%) 적용(단, 2025년은 2회 적용)

※ 위탁병원 산출 근거

- ㉠ 대상자 : 보훈병원 산출 내용과 동일
- ㉡ 수진횟수 : 2023년 말 기준 위탁병원 감면 유족 수진횟수(8.7회) 적용
- ② 지원단가 : 2023년 독립유공자 유가족 진료단가(19,290원)에 4년 평균증감율(3.1%) 적용
(단, 2025년은 2회)

참고 5

독립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관련 소요 예산(추계)

□ 최근 5년간('20~'24)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7월
대상자	15,954	15,984	13,052	11,813	9,970
지원단가	2.7	2.7	3.2	3.4	-
소요비용	43,633	43,709	42,225	40,627	20,058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현황(독립유공자 포함) : 재가보훈실무관(공무직)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독립유공자만 분리 불가

□ 독립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소요 예산(추정)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대상자	10	11	12	13	14	60
지원단가	3.4	3.2	3.2	3.2	3.2	-
소요비용	34	35	38	42	45	194

※ 애국지사 유족 지원율(2%) 반영하여 대상자 인원 산출